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549호 2016. 7. 27. (수)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6 - 76호 도로명주소 고시 2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6 - 759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3

회 담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7. 27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219-159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「주상-한기리1 국도건설공사<1차>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6. 7. 26.

거 창 군 수

- 사 업 명 : 주상-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<1차>
-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- 열람 기간 : 2016.07.26. ~ 2016.08.10
-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
 - 거창군청 건설과(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), ☎ 055-940-3534
- 의견제출기간 : 2016.07.26. ~ 2016.08.10
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
 -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 194-2 외 72필지(28,384㎡)
-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
 - 사무실 외 12건
- 토지소유자 : 이*복 외 59명
- 기 타 :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.